

-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

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.....2
2.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…4
3.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…7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
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별
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의 안 번 호	17-44
------------	-------

제안일자 : 2017. 5. .
제 안 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, 제52조의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포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,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7. 6. 2 ~ 6. 10)
- 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전원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지정장소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4768호, 2017. 4. 18.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6882호, 2017.1.1.) 제39조~제50조,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

4. 기타 :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 별첨

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한 시정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17. 6. 2(금) ~ 6. 10(토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- 마포구 의회사무국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 영 위 원 회	[위 원 장] 이 학 래 [위 원] 김 윤 정, 김 효 식 문 정 애, 서 종 수 이 봉 수, 전 승 학	의회사무국	운 영 위 원 회실	김 용 범	박 명 제

5. 감사일정

구분	일정	내용	비고
준비단계	5.11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○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5.17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서류제출 요구 목록 수합	
	5.22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○ 감사계획 통보	
	5.25(목) ~ 5.30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사관계 자료 수합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단계	6.5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원장의 감사선언○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- 증인선서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- <u>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</u>○ 감사종료 선언	
감처 사리 결단 과계	6.7(수) ~ 6.26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○ 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○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6. 감사요령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행정사항

-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[안]

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,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17. 6. 2(금) ~ 6. 10(토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- 마포구 (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)
- 동주민센터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 위 원 회	행정건설 위원회 위원 전원 (8명)	공보담당관	행정건설 위원회실	유준상	조진남
		감사담당관			
		안전행정국			
		기획경제국		송인수	신영자
		교통건설국			
		동주민센터	해당 동주민센터		
		마포문화재단	행정건설 위원회실	유준상	조진남
		마포구시설관리공단			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17. 6. 2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	
2017. 6. 5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무 과 - 자치행정과 - 문화관광과 - 민원여권과 - 전산정보과 - 생활체육과 	
2017. 6. 7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예산과 - 지역경제과 - 일자리진흥과 - 재 무 과 - 세 무 1과 - 세 무 2과 	
2017. 6. 8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○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○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○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	
2017. 6. 9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행정과 - 교통지도과 - 건설관리과 - 토 목 과 - 치 수 과 - 부동산정보과 ○ 감사종료 선언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안전행정국, 기획경제국, 교통건설국의 각과 및 동주민센터, 마포구시설관리공단, 마포문화재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업무보고 청취
- 바. 질의 · 답변
- 사.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- 가.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[안]

1. 감사의 목적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- 2017. 6. 2(금) ~ 6. 10(토) [9일간]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- 마포구 (복지교육국, 도시환경국, 보건소)
- 동주민센터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위원회	위원장 및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	복지교육국	복지도시위원회실	김건재	박병진
		도시환경국		김용범	박명제
		보 건 소			
		동 주 민 센 터	동 주민센터	김건재	박병진

5. 감사일정

일 정	감 사 대 상	비 고
2017.6.2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	
2017.6.5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지행정과 - 생활보장과 - 어르신복지장애인과 - 가정복지과 	
2017.6.7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청소년과 - 생활체육과 -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	
2017.6.8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 택 과 - 도시계획과 - 도시경관과 - 건 축 과 - 환 경 과 - 공원녹지과 	
2017.6.9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건행정과 - 위 생 과 - 지역보건과 - 의 약 과 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복지교육국과 도시환경국 및 보건소 각 과, 동주민센터별로
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
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
- 위원장 인사
- 증인선서
-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업무보고
- 감사실시(필요시 현지확인)
- 감사종료 선언

8. 행정사항

-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
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
한다.